

제405회 정례회
'22. 12. 6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1일

3. 제안사유

○ 최근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,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, 해외 유입 마약류의 급증 등으로 연령·성별·지역·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.

○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

○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○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
○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- 비밀준수의 의무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, 제7조)
-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,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마약 및 약물 등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단속, 검거, 수사를,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예방교육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,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최근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특히 연령·성별·지역·계층을 불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연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방교육 강화 및 폐해에 대한 홍보 확대,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이 보다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※ 12개 시·도에서 마약류 및 약물 관련 조례 제정·시행 중

- 미제정(5): 울산, 광주, 충북, 전남, 강원

-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고, 마약류 중독자를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써 마약 수요와 범죄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,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타당함.

- 안 제4조와 제5조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·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, 예방교육, 협력체계 구축,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6조와 제7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추진 관계자의 비밀준수의 의무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·단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,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에 예방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.
 - 6월 26일은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이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퇴치의 날이며, 동법 제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는 기념행사 실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, 본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타당함.

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의3(마약퇴치의 날)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·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의2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

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- 안 제9조와 제10조는 효율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체계 구축,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, 전문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,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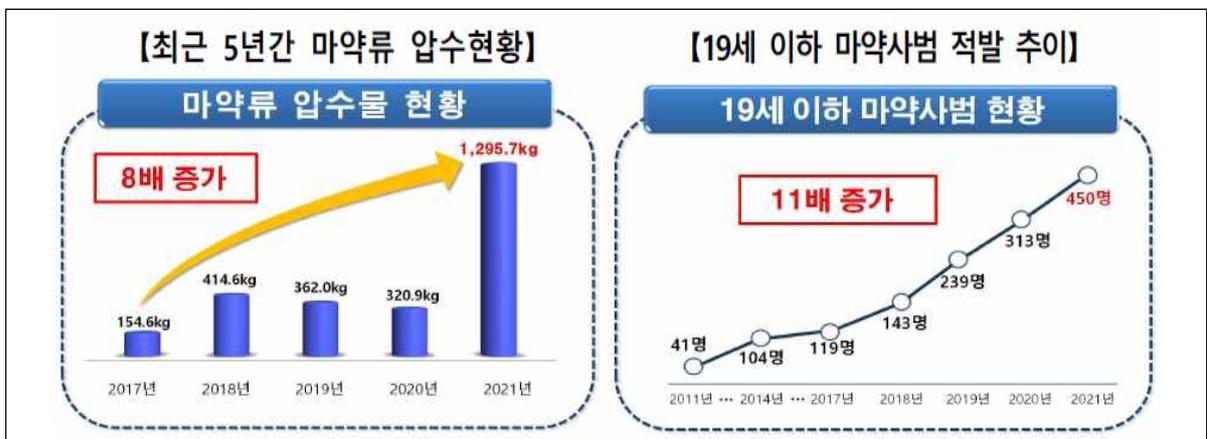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와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써 마약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마약 수요와 범죄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마약류 범죄 현황

□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급증 현황

- 마약사범: 2002. 1월~7월. 10,575명으로 전년 동기(9,363명) 대비 12.9% 증가
- 10대 마약사범 :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
- 마약류 압수량 : 2017년 154.6kg에서 2021년 1,295.7kg으로 5년 만에 8배 급증
- 외국인 마약류 사범
: 2021년 총 2,339명으로 2020년 대비 19.5% 증가,
2022. 1월~7월. 1,367명으로 전년 동기(1,221명) 대비 11.9% 증가



<그림1>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현황 및 19세 이하 마약사범 적발 추이

*출처 : 대검찰청 보도자료(2022.10.14.)

□ 도내 마약범죄 발생 현황

구분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전국	발생건수	6,513건	8,038건	9,186건	8,088건
	발생비*	14.5%	15.5%	17.7%	15.7%
충북		226건	277건	326건	232건

*범죄 발생비=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

(발생건수*100,000)/해당년도 주민등록 인구수

**출처 :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범죄통계

※ 공식적인 마약 범죄 통계 이외에 적발되지 않은 마약 범죄까지 포함한다면 증가 추세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음.